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25. 6.

목 차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
1.1 개발기본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1.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	2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0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10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12
3.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15
3.1 환경보전목표 설정	15
4. 대상지역의 설정	17
4.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17
5. 대안의 설정	19
5.1 대안의 설정 및 비교·검토	19
6.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22
6.1 평가항목의 선정	22
6.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24
6.3 평가범위 및 방법 등의 설정	26
7.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0
7.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30

제 1 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개발기본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금회 계획지구인 청량산도립공원은 경상북도 봉화군과 안동시 경계에 위치한 산악형 자연공원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어져 있어 예로부터 ‘소금강’이라 불리며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발 870m의 장인봉을 중심으로 선학봉, 자란봉 등 총 12개의 봉우리와 8개의 동굴로 이루어져 있어 독특한 산세를 자랑한다.
- 청량산도립공원은 1982년 8월 21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3월에는 국가유산(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학술적·경관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최근 지역 여건과 공원 이용형태의 변화로 인해 기존 청량산도립공원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어 현행 기본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량산도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청량산도립공원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정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량산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여가·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라 도립공원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한다.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카. 관광단지의 개발	5)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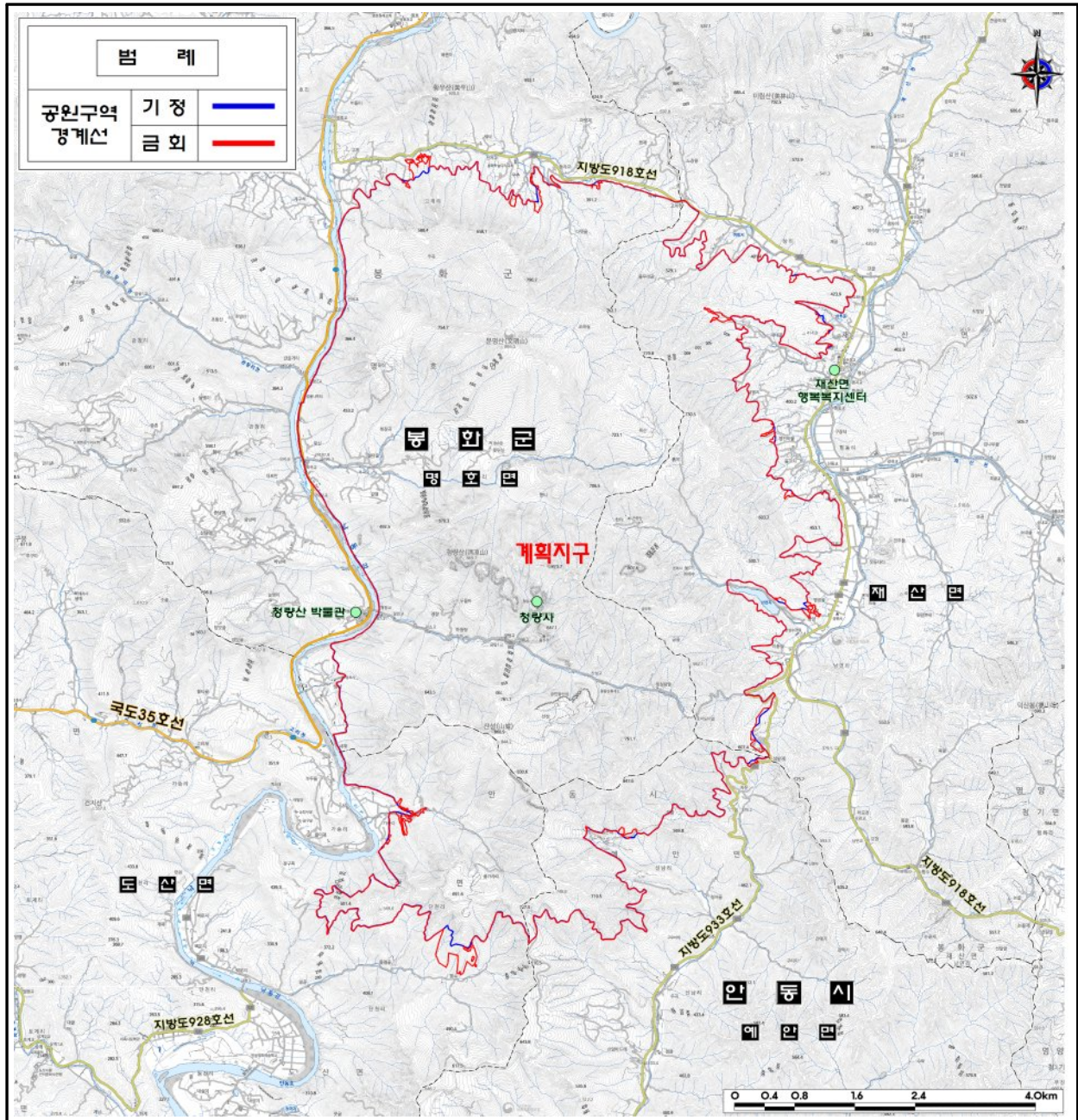
가. 계 획 명 :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재산면 및 안동시 도산면 및 예안면 일원

다. 규 모 : 49.542km²(기정 49.509km², 증 0.033km²)

라.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10년)

마. 시행자 및 승인권자 : 경상북도



<그림 1.3 - 1> 계획지구 위치도

사. 계획의 내용

1) 공원구역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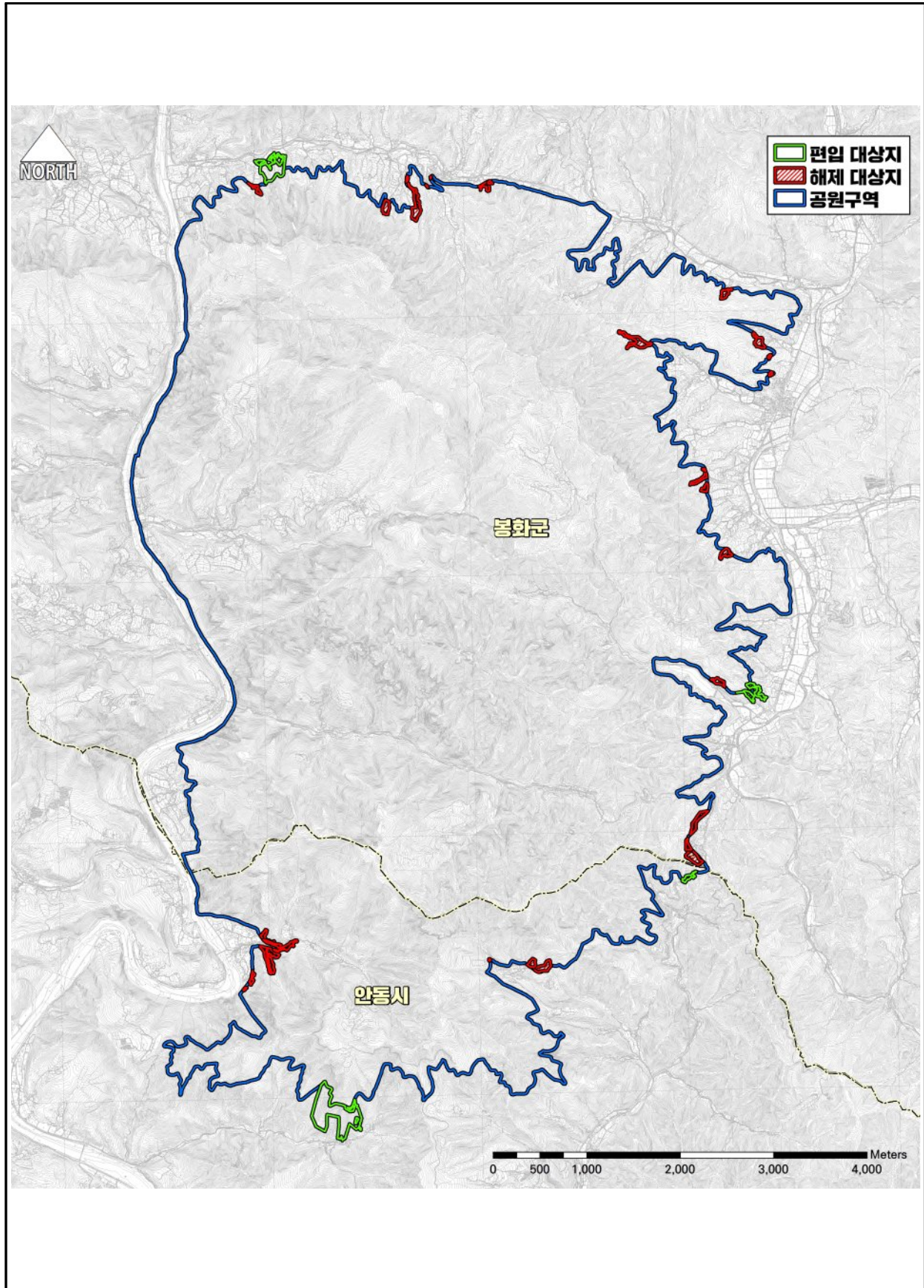
- 금회 공원구역의 경우 생태기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환경적 연결성이 높은 지역 0.207km²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하였고, 경계부에 농경지로 이용되는 지역 0.174km²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원구역이 49.509km²에서 0.033km² 증가한 49.542km²로 계획하였다.

<표 1.3 - 1> 공원구역

구분	기정(km ²)	증감(km ²)			변경(안)(km ²)
		소계	편입	해제	
소계	49.509	증 0.033	0.207	0.174	49.542
봉화군	41.139	감 0.058	0.062	0.120	41.081
안동시	8.370	증 0.091	0.145	0.054	8.461

<표 1.3 - 2> 공원구역 경계 변경지역 세부 현황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공원편입	소계	-	206,667	생태·환경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편입
	①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일원	45,483	
	②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일원	16,106	
	③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 일원	5,068	
	④	안동시 도산면 단천리 일원	140,010	
공원해제	소계	-	173,668	경계부 중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해제
	①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일원	37,191	
	②	봉화군 재산면 상리 일원	6,123	
	③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일원	43,630	
	④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일원	32,999	
	⑤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 일원	16,652	
	⑥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일원	37,073	



<그림 1.3 - 2> 공원구역(변경)

2) 공원 용도지구 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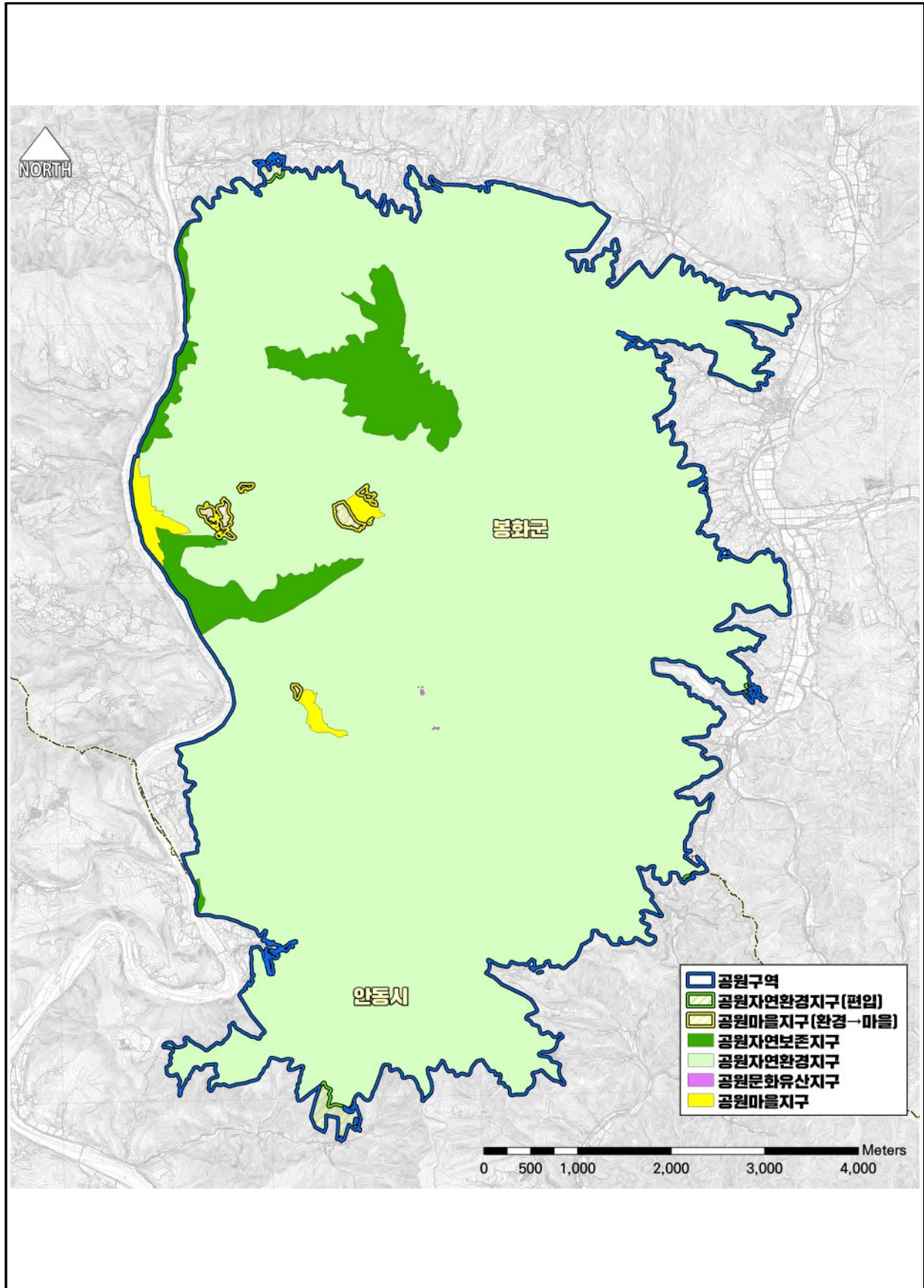
- 금회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공원 용도지구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200m 범위 내에 위치한 농경지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변경함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토지이용실태를 반영하였다.

<표 1.3 - 3> 공원 용도지구 계획

구분	면적(km ²)			비고
	기정	증감	금회	
합계	49.509	증 0.033	49.542	
공원자연보존지구	2.562	-	2.562	
공원자연환경지구	46.534	감 0.117	46.417	편입 0.207km ² , 해제 0.174km ² 변경(자연환경→마을) 0.150km ²
공원문화유산지구	0.003	-	0.003	
공원마을지구	0.410	증 0.150	0.560	변경(자연환경→마을) 0.150km ²

<표 1.3 - 4> 공원 용도지구 변경내용

구분	변경 면적(km ²)	내용
편입 (공원자연환경지구)	0.021	• 공원구역 편입지에 대하여 용도지구 적합성평가를 통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계획함
변경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0.150 (윗뒤실 0.065, 청량 0.009, 북장골 0.008, 절터골 0.068)	• 기준에 부합하는 기존 공원마을지구 최외곽주택으로부터 범위 내(200m 이내) 농경지를 공원마을지구로 확대 계획함



<그림 1.3 - 3> 공원 용도지구 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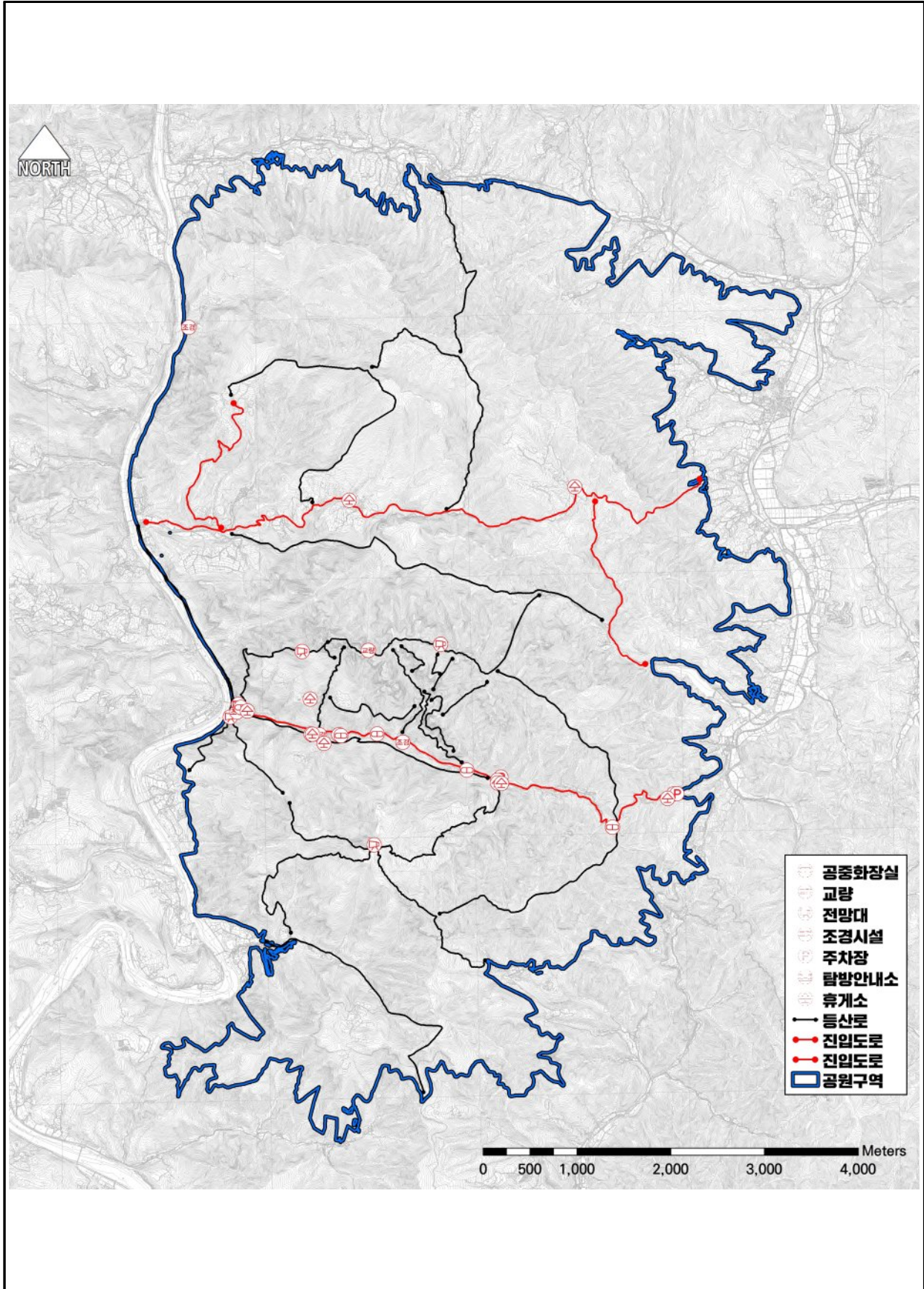
3) 공원시설계획(변경)

- 금회 도립공원 변경계획에서는 추가적인 공원시설 설치 계획이 없으며, 미조성 시설의 일몰제 적용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원관리청 사업 착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 및 짚라인 등의 공원시설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또한, 공원시설의 명칭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표 1.3 - 5> 공원시설계획

구분	세부시설명	공원시설(개소)			비고
		기정	증·감	변경(안)	
계		68	감) 11	57	
교통·운수시설	소계	32	감) 1	31	
	진입도로	4	-	4	
	주차장	4	감) 1	3	
	교량	1	-	1	명칭 정정 (현수교→교량)
	탐방로	23	-	23	명칭 정정 (등산로→탐방로)
보호 및 안전시설	소계	7	감) 2	5	
	대피소	2	감) 2	-	
	조경시설	5	-	5	분류 정정(보호 및 안전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소계	28	감) 8	20	
	야영장	3	감) 3	-	폐지 3(미조성 3)
	전망대	6	감) 1	5	폐지 1(미조성 1)
	휴게소	12	감) 3	9	폐지 3(미조성 3)
	공중화장실	6	-	6	
	짚라인	1	감) 1	-	폐지 1(미조성 1)
공공시설	소계	1	-	1	
	탐방안내소	1	-	1	

주) 관리소 및 화장실은 각각의 시설로 구분하여 고시



<그림 1.3 - 5> 공원시설 계획도(변경)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계 획 명 :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
- 심의기간 : 2025년 5월 28일 ~ 2025년 6월 20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표 2.1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목록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의 자격
위원장	경상북도	기후환경 정책과장	이00	당연직
위원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권00	협의기관(지명) 공무원
	경상북도	자연생태팀장	서00	계획수립기관장(지명) 공무원
	계명대학교	교수	정00	위원장(위촉) 민간 전문가①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부연구위원	허00	협의기관장(위촉) 민간 전문가②
	봉화군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00	지방자치단체장(위촉) 공무원
	안동시	공원녹지과장	송00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이장	정00	주민대표 (봉화군)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이장	강00	주민대표 (안동시)
	(사)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00	시민단체 추천

"잊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 심의 요청(경상북도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1.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변경(금오산, 청량산, 문경새재) 전략 환경영향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3.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하니 '25. 6. 20.(금)까지 심의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심의안건: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나. 심의기간: 2025. 6. 20.(금) 18:00 까지
 - 다. 심의방법: 서면심의
 - 라. 의견제출: 공문 또는 서명 후 이메일 송부(jhkim16@korea.kr)

- 불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2. 평가협의회 명단 1부.
 3. 심의의견서(양식) 1부.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자료 1부(별송).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수신자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 김천시장(산림복지과장), 안동시장(공원복지과장), 구미시장(공원복지과장), 문경시장(도시과장), 칠곡군수(환경관리과장), 봉화군수(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국환경연구원장, 계명대학교총장, (사)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 [redacted] 위원, 박 [redacted] 위원, 이 [redacted] 위원, 정 [redacted] 위원, 강 [redacted] 위원, 신 [redacted] 위원

주무관 김 [redacted] 자연생태팀장 서 [redacted] 기후환경정책 전결 2025. 5. 28.
과장 이 [redacted]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정책과-9190 (2025. 5. 28.) 접수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s://gb.go.kr/Main/index.html>

전화번호 054-880-3525 팩스번호 054-880-3519 / jhkim16@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그림 2.1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심의 협조요청 공문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div data-bbox="255 369 715 101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청량산도립공원의 공원구역 편입 및 해체, 용도지구의 변경, 공원시설계획 변경 등 도립공원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고, 반영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자연 생활환경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p>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구역의 편입 및 해체와 용도지구의 변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을 표로 제시하고, 그 지역의 현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환경보전지역, 생태자연도, 식생, 수계, 경문시설 등 대상지역의 현황을 제시하고 위성도 및 위지도를 포함하여 제시 <p>3.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평가준비서 상에 제시한 생태기반평가도(06북)로 공회 변경계획의 적정성 판단이 불가능한 바, 대상 지역마다 하나의 식별가능한 위성도 및 도면으로 제시하되, 전체 도립공원에서 각 블록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함. <p>4.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p>5.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평가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량산도립공원은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자연유원에 해당되는 바, 평가서 초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청량산도립공원은 문화권, 안동시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범위를 검토하여 대상지역별로 공회점수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right;">2025. 6.</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권 ○ ○ ○</p> </div>	<div data-bbox="869 369 1332 61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 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 범위·방법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계획의 공정한 거래정책을 위한 운영지침(환경부, '12.10.)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을 검토서」를 작성 제시하여야 함. ○ 각종 도면, 사진 등은 육안 판독이 가능하도록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범례를 명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right;">2025. 6.</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권 ○ ○ ○</p> </div>
<p>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권○○</p>	
<div data-bbox="247 1176 726 190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제시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대상지역의 범위 및 대안의 선정 등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며, 공원시설계획의 축소는 생태적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편입 및 해체 대상지역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자료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p>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p>3.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공원은 생태 보전과 공원 이용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미 조성 공원시설계획의 축소는 생태적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회편입 및 해체 지역은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본 토지이용 구상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p>4.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p>5.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 범위 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공회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p>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 및 해체 대상지역에 대한 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함 <p style="text-align: right;">2025. 6.</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서 ○ ○ ○</p> </div>	<div data-bbox="861 1176 1348 188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공회계획 기준에 부합하도록 반영한 청량산도립공원 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등이 구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환경여건과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p>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공원 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생태·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타당하게 설정하였음 <p>3.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토지이용 현황과 공회계획 기준에 부합하는 청량산도립공원 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p>4.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p>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 범위 및 방법을 객관적으로 설정하였음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주민들이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p>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5. 6. 5.</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권 ○ ○ ○</p> </div>
<p>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서00</p>	<p>계명대학교 정00</p>

<그림 2.2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

<그림 계속>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다수의 공원구역 해체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완충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의 원진적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평가 과정에서 해체 대상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그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구역 해체지역과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의해, 공원시설계획 변경지역 중 불가 또는 관련 시설공사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주요 평가대상지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29-30쪽)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경제부의 농경지는 광역적 생태기반평가 위해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해체 범위도 정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지이용계획의 정형성, 향후 내부로의 침투적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87-91쪽)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단·방법적 대안 검토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의 준을 여부보다는(105쪽), 용도지역 변경의 구체적 방식(예: 면적을 구분한 시기별·단계별 변경), 경제 선형 방식(정형화된 직선화, 불규칙 경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함 4.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경제부의 공원구역 해체가 예상되는 지역은 문헌조사 외에 현지 현황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110-117쪽)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 폐지는 공원관리청의 사업 수요 및 일몰제 적용에 따른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13-15쪽), 지역 주민 및 타방역의 이용 불편 우려를 고려할 때, 시설 축소에 대한 필요성과 그 적정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style="text-align: right;">2025. 6. 20.</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허남주</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된 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지천자원을 보전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친환경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된 대상지역의 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구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의 설정은 적정하게 기술되어 있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은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사료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량산 도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을 최소화하여 자연자원보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 <p style="text-align: right;">2025. 6. 20.</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권영민</p> </div>
<p>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허00</p>	<p>봉화군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김0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청량산도립공원의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 및 이용자 활성화 등을 위한 도립공원 계획 변경으로, 주변 현황 조사 및 영향 예측을 통해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영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공원 기본계획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생태환경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지역을 설정함 3.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성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도립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평가기준을 비교·검토한 후 실질적인 대안을 선정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계획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항목과 방법을 설정하였고, 계획지구 인근으로 마을회관, 주거지 등이 위치하므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5. 6. 2</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송영민</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은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4.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바랍니다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5. 6. 2</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정영민</p> </div>
<p>안동시 공원녹지과 송00</p>	<p>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정00</p>

<그림 계속>

<p>[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량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으로 주변의 환경적인 피해 및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실천하여야 함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법령에 제시된 환경기준으로 미달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여건 및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함 3.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계획함 4.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은 전체적으로 적절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대한 피해가 없기를 바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5. 6. 2 심의위원 : 강○○</p>	<p>[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청량산))</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공회계획변경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 탐방객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를 반영하여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금회 공회계획변경의 범위 및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3.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공회계획변경은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4.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계획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람 및 설명회 등의 절차를 단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추진해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5. 6. // 심의위원 김○○</p>
<p>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강00</p>	<p>(사)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00</p>

제 3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1 환경보전목표 설정

- 환경보전목표 설정시 계획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각종 법령에 제시된 환경기준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3.1 - 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계계획의 적정성		• 자연공원 기본계획 및 환경정책 등에 부합되는 도립공원 계획수립		• 상위계획의 목표 및 적합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우선한 대안 선정		• 도립공원 내 주민불편의 최소화, 효율적인 공원개발 및 관리 등을 고려한 최적안 선정
2.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훼손 최소화 • 동·식물상 서식지 훼손 및 교란방지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계획수립
		자연환경 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유산 보전 • 지형변화 최소화 • 생태축을 훼손 및 단절 방지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생태축 영향 최소화를 위한 계획수립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 및 이질적 경관 변화 방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적 변화 최소화를 위한 계획수립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공사시 하류수계에 대한 부유물질(SS) 목표농도 준수 - 평상시 25mg/L 이하 - 강우시 100mg/L	• 계획시행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기준 준수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상의 변화는 없거나 미미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제외
		대기질	• 공사시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질 목표 기준 준수 - PM-10 : 100 μ g/m ³ (24시간) - PM-2.5 : 35 μ g/m ³ (24시간) - NO2 : 0.06ppm(24시간)	• 계획시행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기준 준수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온실가스	• 계획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연공원 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표 계속>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사유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 최소화 • 공사시 소음·진동 목표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 65dB(A) - 진동 : 65dB(V) 	• 계획시행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기준 준수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 및 폐기물 적정 처리 	• 관련 법령 준수로 인한 주변 환경 영향 최소화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관련 적법 처리 	• 관련 법령 준수로 인한 주변 환경 영향 최소화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최소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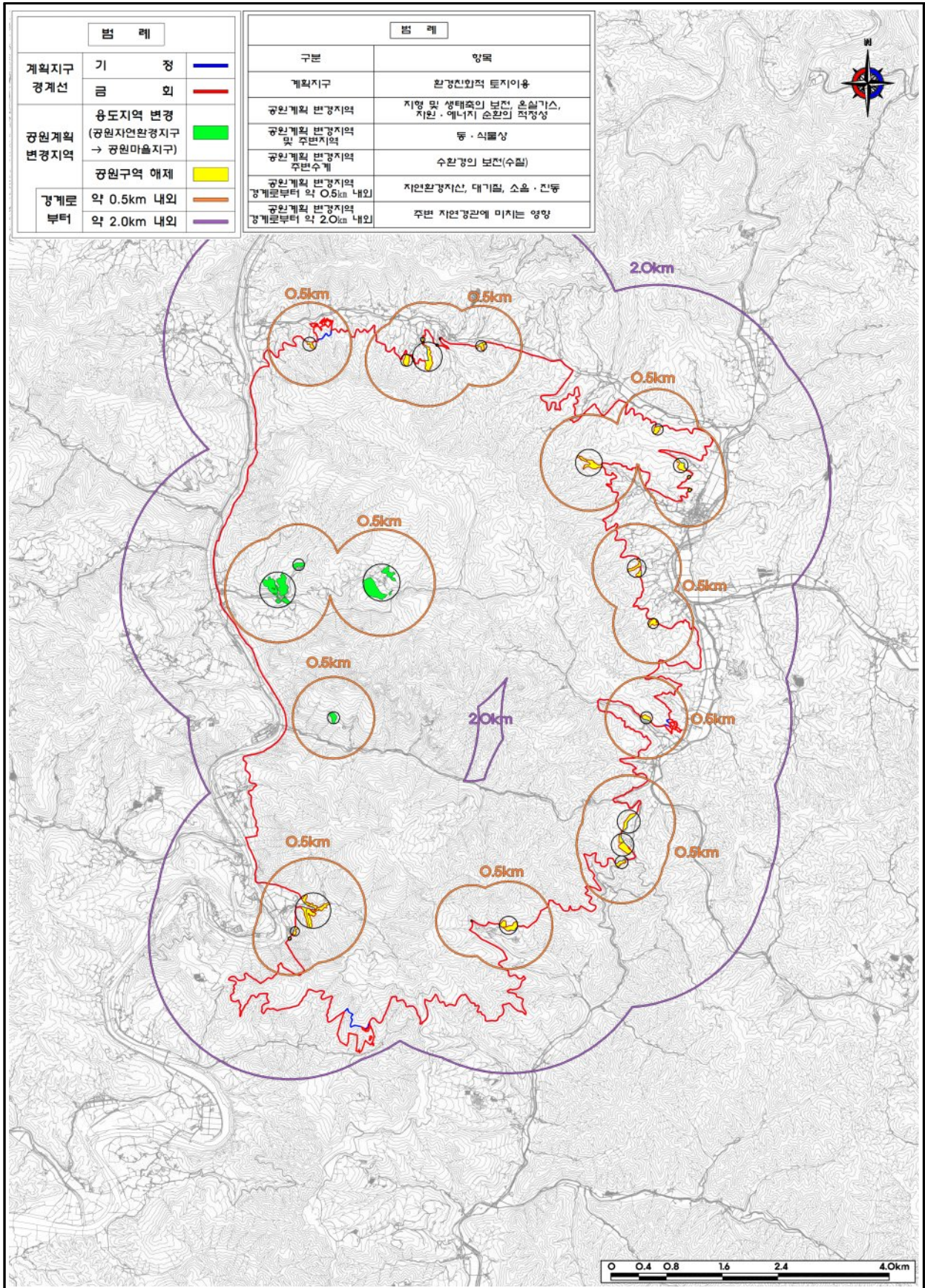
제 4 장 대상지역의 설정

4.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계획의 특성,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특히 계획지구 내 공원구역 해제지역과 용도지구 변경지역(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을 주요 평가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 1. 공원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생태환경적 연결성을 고려할 때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평가대상 지역 설정에서 제외함
- 2. 평가대상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계획의 추가, 주변 영향이 예상되는 구역의 포함, 또는 계획 제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는 공원구역 해제와 용도지구 변경으로 인해 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4.1 - 1> 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내용

항목		구분	평가대상지역 선정내용	대상지역 범위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 및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 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 및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 등에 의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 존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약 0.5km내외)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축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경관변화가 관찰되는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시행에 따른 부유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공원계획 변경지역 주변수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 계획지구 기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인근의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	주변 기상관측소 (봉화기상관측소)	
		대기질	· 계획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약 0.5km내외)	
		온실가스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소음·진동	· 계획시행에 따른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약 0.5km내외)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각종 폐기물 연계처리가 가능한 지역		계획지구 관할 시·군 (안동시, 봉화군)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 계획시행에 따른 각종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사회·경제환경 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 여부	계획지구	



<그림 4.1 - 1> 대상지역 설정도

제 5 장 대안의 설정

5.1 대안의 설정 및 비교·검토

- 본 계획의 대안은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고, 각 대안에 대하여 비교·평가를 제시하였으며, 본 계획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수요·공급」, 「시기·순서」, 「기타」 측면에 대한 대안은 제외하였다.

가.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표 5.1 - 1> 계획의 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및 선정

구분	대안1(Action)	대안2(No Action)
토지이용측면	• 도립공원 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 기본방향에 맞는 효율적인 공원개발 및 관리가 가능함	• 관리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힘들며,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예상됨
사회적측면	• 도립공원 내 주민불편 해소 및 자연환경의 보전 및 시·군의 보건,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	• 개발수준이 타지역의 성장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하여지역 불균형 심화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 공원계획 변경지역 개발로 인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수환경에 변화 없음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각종 보호지역과 이격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생태기반평가 결과 4~5등급 지역에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생태계 변화에는 영향이 미미함	• 생태계 변화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공원계획 변경지역 개발에 따른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나 기존 농경지로서 지형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공원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공원개발과 주민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환경을 개선함	•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공원계획 변경지역 개발로 인한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나, 건폐율이 60% 이하 및 높이제한 12m이하로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을 판단됨	• 현 상태의 경관 유지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공원계획 변경지역 개발로 인하여 환경기준 유지에 다소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기준을 유지 및 목표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현 상태를 유지함
선정(안)	◎	
선정사유	•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관리 기본방향에 맞춰 공원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청량산도립공원 내 주민불편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공원개발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대안 1안(Action)을 선정하였음	

나.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 검토

<표 5.1 - 2>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 검토

구분	대안1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에 별도 기준을 추가하여 재정립)	대안2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구역 편입·해제 기준 -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생태적으로 연결되는 곳 · 생태·경관·문화자원의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 -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포함 • 생태기반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지기반평가(8개 항목) - 원시성 평가(3개 항목) - 보호지역 평가(5개 항목) - 지형·지질·경관 문화(3개 항목) - 토지이용(1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구역 편입·해제 기준 -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생태적으로 연결되는 곳 · 생태·경관·문화자원의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 -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 생태기반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지기반평가(8개 항목) - 원시성 평가(3개 항목) - 보호지역 평가(5개 항목) - 지형·지질·경관 문화(3개 항목)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의 이용여건을 고려한 공원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개발이 가능 • 생태기반평가의 평가항목, 격자의 크기를 조정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된 기준으로 법적·행정적 안정성이 높음 • 현장여건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일 수 있음
선정(안)	◎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공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문화적·가치가 낮은 지역은 공원구역과 공원 용도지구의 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 및 집단민원요구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민원 완화가 가능한 대안1을 선정하였음 	

다.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

<표 5.1 - 3>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 및 선정

구분	대안1	대안2
	기존 타당성조사 기준 준용 및 보완기준 마련	기존 타당성조사 기준 준용
지역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량산 지역의 고유한 지형·이용 실태 반영 가능 • 실질적 이용 현황 및 주민 생활권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 •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현장여건 반영 한계
생태·경관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를 통해 생태적 가치가 낮은 구간 선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생태 가치 고려 부족시 생태적 가치 훼손 우려
주민 수용성 및 갈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요구 및 실이용권 일부 수용 가능 • 민원 해소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요구 반영이 어려워 반발 가능성이 높음
선정(안)	◎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검토시 청량산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실생활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입지 특성을 감안한 실질적 판단이 가능한 대안1을 선정하였음 	

제 6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6.1 평가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 평가항목 및 일반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그 밖에 계획의 특성상 영향이 경미한 항목이나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항목을 현황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 또한, 계획의 특성상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표 6.1 - 1>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항목	구분	평가항목의 설정				사유	
		중점 평가	일반 평가	현황 조사	제외 항목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	-	-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서식환경 변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향후 공산시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대책이 필요하므로 동·식물상 항목에 대해서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자연환경자산	-	○	-	-	· 본 계획은 청량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위한 것이며, 계획지구 내에 자연환경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본 계획에 수립에 따른 영향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연환경자산에 대해서 일반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	-	-	·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공산시 절·성토작업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적절한 저감대책이 필요하므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항목에 대해서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	-	·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공산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자연경관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이 필요하므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항목에 대해서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수환경의 보전	수질	○	-	-	-	·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공산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의 수질 악화가 예상됨. 이에 따라 하천수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이 필요하므로 수질 항목에 대해서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수리·수문	-	-	-	○	· 공원계획 변경시 대규모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향후 공사에 따른 우수유출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수리·수문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함
		해양환경	-	-	-	○	· 계획지구는 해안에 위치하지 않아 계획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영향이 없음에 따라 금회 해양환경 항목에 대해서 제외함

<표 계속>

항목	구분	평가항목의 설정				사유	
		중점 평가	일반 평가	현황 조사	제외 항목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	○	-	• 평가항목별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황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음
		대기질	○	-	-	-	•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대기질 항목에 대해서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악취	-	-	-	○	•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친화적 이용이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악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악취 항목에 대해서 제외함
		온실가스	○	-	-	-	•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온실가스 저장·흡수량이 변경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이 필요하므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해서 중점검토 항목으로 선정함
		토양	-	-	-	○	• 공원계획 변경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이 낮고, 이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토양 항목에 대해서 제외함
		소음·진동	○	-	-	-	•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공사시 장비가동 등으로 소음·진동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소음·진동 항목에 대해서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	-	• 계획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이 환경기초시설로의 연계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황조사항목으로 선정함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	-	•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공사시 장비가동 및 공사인부, 운영시 이용객 등에 의한 각종 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	• 공원계획 변경 수립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항목에서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위생·공중보건	-	-	-	○	• 공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위생·공중보건 관련시설의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금회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대해서 제외함	
	전파장해, 일조장해	-	-	-	○	•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계획이 없으며, 전파를 발생시키는 시설 또한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금회 전파장해, 일조장해 항목에 대해서 제외함	
	인구·주거	-	-	-	○	• 공원계획 변경은 효율적인 공원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봉화군과 안동시의 인구 및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금회 인구·주거 항목에 대해서 제외함	
산업	-	-	-	○	• 공원계획 변경은 효율적인 공원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금회 산업 항목에 대해서 제외함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6.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선정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표 6.2 - 1>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등

항목		구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청량산도립공원) 내용적 범위 : 주요종 분포현황, 법정보호지역, 생태자연도, 겨울철새 도래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공원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도립공원 내 일부 지역에 대한 공원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계획지구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자연환경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범위 : 5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문헌조사 및 관련도서 등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내용적 범위 : 표고, 경사도, 지질, 주요능선 등 시간적 범위 : 5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문헌조사, 계획관련도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지형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로부터 약 2.0km 이내의 지역 내용적 범위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관자원 등 시간적 범위 : 5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현지 및 문헌조사, 경관변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를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2024, 환경부」에 제시된 조망점 선정기준 중 원경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지구 주변지역으로 2.0k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수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내용적 범위 : 수계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취·정수장 현황, 상·하수도 현황, 수질현황 등 시간적 범위 : 5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공정시험기준, 현지 및 문헌조사, 관련도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토사 및 비점오염원 유출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수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봉화기상관측소) 내용적 범위 : 기온, 강수량, 풍속, 풍향, 바람강미도, 일조시간, 현상일수 등 기상개황 시간적 범위 : 10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계획지구의 기상상태를 알 수 있는 기상관측소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상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의 기상관측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표 계속>

항목		구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공원계획 변경지역 경계로부터 1.0km 이내 내용적 범위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대기질 현황 등 시간적 범위 : 5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현지 및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확산 및 계획지구 주변 주요 정온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내용적 범위 :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온실가스 관련 법령 및 정책,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운 영시설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현황 등 시간적 범위 : 10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문헌조사, 관련도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으로 온실가스 저장량 및 흡수량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의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공원계획 변경지역 경계로부터 0.5km 이내 내용적 범위 : 정온시설 현황, 주변 소 음원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 시간적 범위 : 5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현지 및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으로 인해 소음·진동 발생 및 계획지구 주변 주요 정온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활 용 가능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봉화군/안동시) 내용적 범위 : 하수처리시설 현황, 분뇨 처리시설 현황,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기타폐기 물 처리시설 현황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시간적 범위 : 5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과의 연계처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공간적 범 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봉화군/안동시) 내용적 범위 : 폐기물 수거 현황, 폐기 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 현황, 수거인원 및 장비 현황,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등 시간적 범위 : 5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문헌조사, 관련도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및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과의 연계처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 현황, 토지이용 현황 등 시간적 범위 : 5년 이내 최신자료 활용 방법 : 문헌조사, 관련도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으로 토지이용이 변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 	

6.3 평가범위 및 방법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설정

- 평가항목별 예측 범위는 계획의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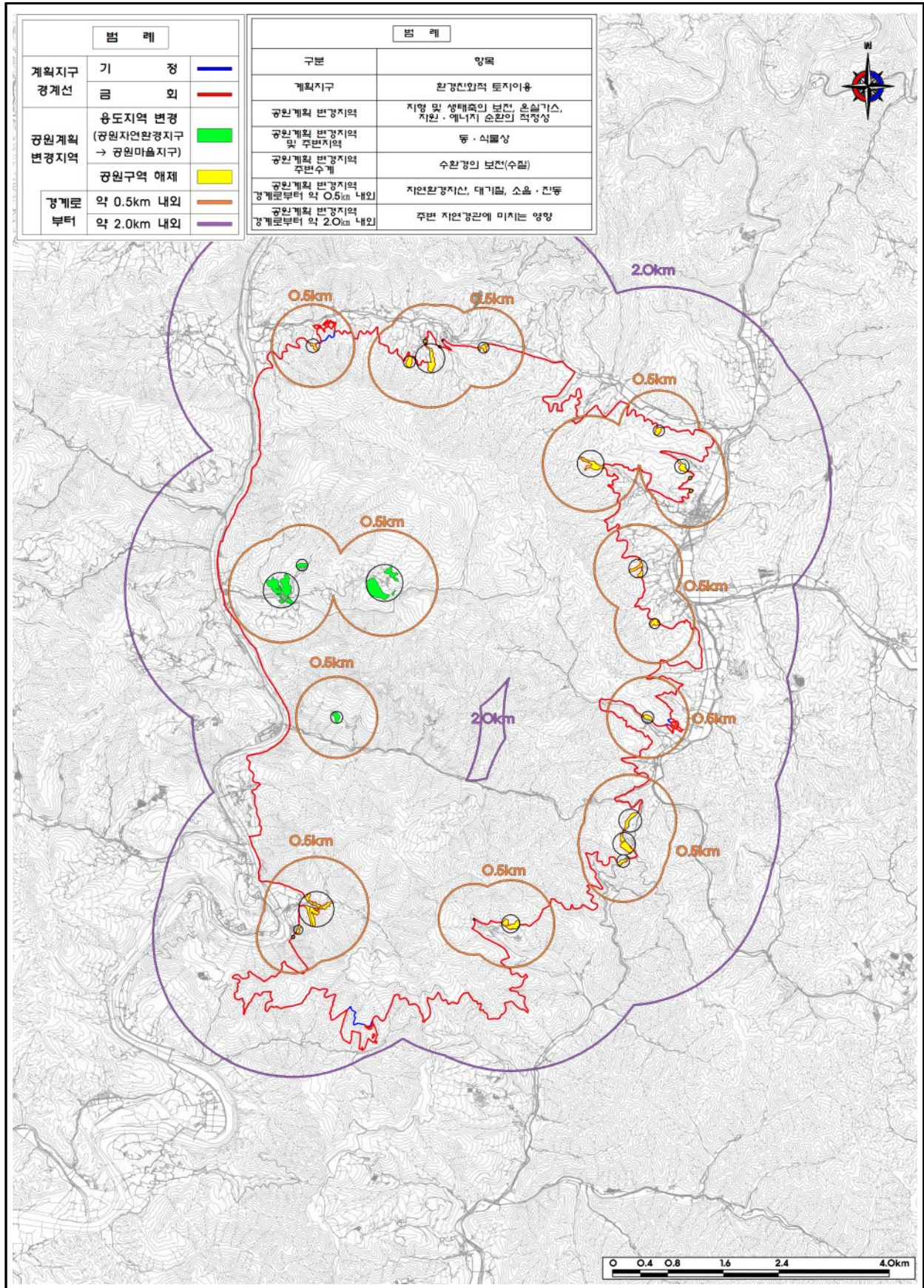
<표 6.3 - 1> 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내용

항목		구분	평가대상지역 선정내용	영향예측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환경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공원 계획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을 영향 예측범위로 설정하였음 	공원계획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등의 자연환경자산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4, 환경부)」를 참고하여 공원계획 변경 지역 경계로부터 0.5km 내외로 설정하였음 	공원계획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약 0.5km 내외)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시 지형의 변화로 인한 지형·지질 및 생태축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 표고·경사분석, 지질현황,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분포현황, 주요정맥 및 능선축 현황 등의 검토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토량이동,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2024, 환경부」을 참고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지역경관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면적 개발사업 원경 조망점 기준 약 2.0km 내외로 설정하였음 	공원계획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약 2.0km 내외)	
	수환경의 보전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해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직접적인 수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주변수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기상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 	계획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봉화기상관측소)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영향이 예상되는 지점 - 택지개발 평가범위 설정기준 및 유사사업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0.5km 내외로 설정하였음 	공원계획 변경지역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약 0.5km 내외)

<표 계속>

항목		구분	평가대상지역 선정내용	영향예측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직·간접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수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온실가스 현황 예측 - 운영시 직·간접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 영향예측 	공원계획 변경지역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시 건설장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0.5km 내외로 설정하였음 	공원계획 변경지역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약 0.5km 내외)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시 폐기물 연계처리지역 - 환경기초시설의 소각·매립·기타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들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봉화군/안동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시 인부에 의한 분뇨, 장비에 의한 폐유 및 폐자재 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공원계획 변경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주) 공원계획 변경지역 - 용도지구 하향지역(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



<그림 6.3 - 1> 계획지구 대상지역 설정도

나. 평가항목별 예측 및 분석에 관한 내용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6.3 - 2> 평가항목별 예측 및 분석방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설정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 환경을 파악하여 이들 보호대상이 계획시행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예측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여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지형변화 및 생태축 영향 검토 • 지형·지질 관련 문헌조사 • 수치지형도·지질도, 현장조사 • 계획관련 도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관 파악 • 계획관련 도서
	수환경의 보전		• 수질 조사 • 수질오염물질 처리 방안 검토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적정(유사)원단위 적용, 검토, 계획관련 도서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기상자료 조사(봉화기상관측소) • 기상청 기상연보
		대기질	• 대기질 조사 • 대기오염물질 영향 검토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AP 42, Compil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 Factors, U.S. EPA • Exhaust and Crankcase Emission Factors for Nonroad Engine Modeling, U.S. EPA • AERMOD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 및 예측 •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침
		소음·진동	• 소음·진동 조사 • 소음·진동 영향 검토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 점음원 및 진동의 거리감쇠식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파악 • 문헌 및 계획관련 도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한 영향 검토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발생원단위 및 유사사례 적용
사회·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 변화 예측 • 계획관련 도서

제 7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7.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 또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일간신문)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이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평가서 초안의 요약문을 게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추후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평가서 초안을 주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게시하여 공람하도록 할 것이다.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하며, 장소 및 일시는 추후 해당 시와 협의 하에 결정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마을에 공지한 후 개최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주민들의 공청회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라. 주민의견수렴결과 및 반영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이다.